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,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 이에,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. (별표 3)

2)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징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 이에,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,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. (별표 5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2호가목고목27. 제27호 중 “제33조 또는 제49조의7”을 “제33조, 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”로 한다.

별표 5 제1호제19호 위반내용란 제19호 중 “제33조 또는 제49조의7”을 “제33조, 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 (별표3·5)

현행

행

[별표3] 사업면허취소·사업허가취소·사업
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1.~26.(생략)				
27. 법 제23조,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 제1항 제22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사업 일부 정지 (40일)	사업 일부 정지 (60일)

[별표5]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
따른 과징금의 액수

위반내용	위반 횟수	과징금
		플랫폼운송사업· 플랫폼중개사업
19. 법 제23조, 제33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1차	120
	2차	240
	3차	360
	이상	

개정안

[별표3] 사업면허취소·사업허가취소·사업
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

위반내용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1.~26.(생략)				
27. 법 제23조, 제33조, 49조의7 또는 49조의21 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85조 제1항 제22호	사업 일부 정지 (20일)	사업 일부 정지 (40일)	사업 일부 정지 (60일)

[별표5]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
따른 과징금의 액수

위반내용	위반 횟수	과징금
		플랫폼운송사업· 플랫폼중개사업
19. 법 제23조, 제33조, 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 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1차	120
	2차	240
	3차	360
	이상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	
연 락 처	(044) 201 - 4756